

미등록 승강기 제보 안내

설치 후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일부 미설치 되어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국민의 제보를 받아 동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 미등록 승강기란?

-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의 승강기
 - 법 제2조(정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승강기 종류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 예외 1.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예 : 삭도, 케이블카)
2.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예 : 크루즈여객선 내부 승강기)
 3.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예 : 승강기식 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광산에 설치된 권양장치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리프트 (화물전용운반)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설비 (예 : 주한미군 주둔지 내 시설물)

2 미등록 승강기 관련 법령

- 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8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3 미등록 승강기 제보 연락처

☎ 1566-1277



□ 승강기 종류 분류(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승객용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2) 전망용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7) 주택용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나. 에스컬레이터	1) 승객용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리프트	1) 장애인용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구조로 제작 및 설치한 **승강기**(예시)

			
엘리베이터(승객용, 장애인용,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병원용)	
			
엘리베이터(전망용)		엘리베이터(주택용)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Dumbwaiter)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차용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경사형)	



장애인용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법이 아닌** 기타 법 적용을 받는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한 **운반용 기계·기구**



휠체어리프트(기타 법 적용)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설치가 아님

모노레일(기타 법 적용)



건설용 리프트(기타 법 적용)

기계식 주차기(기타 법 적용)



일반작업용·산업용 리프트(기타 법 적용), 기타 운반용 기계·기구